대한치과마취과학회
치과진정 학회인정의 제도에 관한 규정

2010년 6월 27일 제정

제1조 **(목적)** 치과진정 학회인정의 제도는 치과진정법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치과의사 또는 의사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인하여 치과 진정법 수준의 증진, 안전성 향상과 더불어 치과마취과학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복지에 공헌하는 것이 그 설립 목적이다.

제2조 **(인정의 구분)** 치과진정 학회 인정의는 치과진정 학회인정의(경구, 흡입)와 치과진정 학회인정의(정주)로 자격을 분류한다.

제3조 **(인정의위원회의 설치)** 본제도 실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인정의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4조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위원의 구성방법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에 따르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는 위원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 사업)**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정의 신청자의 심사, 인정 및 등록
2. 인정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정의 자격고시에 관한 사항
4. 인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정의 자격상실의 심사
6. 기타 인정의 제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회 위임 사항

제8조 인정의 자격 조건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조 인정의 심사는 시행세칙에 정하여진 서류와 심사비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제10조 인정의 심사 시에는 서류심사를 시행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 구두 또는 실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인정의 위원회에서 2/3의 찬성으로 결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격을 부여한다.

제11조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인정의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징수한다.

제12조 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후에는 갱신하여야한다.

제13조 갱신 시에는 별도로 정하여진 갱신 심사료를 납부하고 시행세칙에 정하여진 신청서류를 인정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인정의의 갱신은 인정의위원회의 심사 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인정의는 다음의 경우 인정의위원회의 심의후 이사회의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자격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우
2. 치과의사 또는 의사의 면허를 상실한 경우
3.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인정의로서 부적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5. 갱신절차를 행하지 않은 경우

KDSA
THE KOREAN DENTAL SOCIETY OF ANESTHESIOLOGY

제16조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내용은 치과 진정법에 필요한 학문적 이론과 임상적 기술의 습득은 물론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지시 및 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되어야한다.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17조 교육과정내용에는 대한치의학회의 치과 진정법 가이드라인과 학회의 권장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제18조 본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9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정기총회를 통과한 날로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치과진정 학회인정의제도실시에 관한시행세칙

2010년 11월 23일 제정
2019년 12월 19일 개정

제1조 자격 인정 방법

(1) 학회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비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2)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인정의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징수한다.

(3) 인정의 심사 신청료는 ₩100,000원, 인정료는 ₩3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인정 기준

(1) 대한민국 치과의사 또는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 3년 이상 계속회원이어야 한다.

(2) 계속회원기간 3년 중 2회 이상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종합학술대회를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경구흡입진정은 최소 18시간, 정주진정은 최소 60시간 이상의 치과진정법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기본생명구조술과 고급생명구조술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한다.

(4) 치과마취과학에 관한 1편 이상의 연구보고 또는 증례보고가 대한치과마취학회지나 유관학회지 또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어야 한다.

(5) 치료증례 최소 50증례를 제출하여 4항을 대신 할 수 있다.

(6)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자격을 인정한다.

제3조 인정의 심사

(1) 인정의 심사는 학회 인정 평점 100점 이상을 가진 자가 다음 서류와 심사비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1 응시원서 (학회양식)

2. 본 학회 3년 이상 회원 증명서

3. 이력서 및 연구 업적 목록 (학회양식)

4. 교육증명서

5. 증례일람표

6. 치과의사 또는 의사 면허증사본

(2) 평점 내용

평점 내용 및 단위	점 수
회원 기간 : 1 년당	10 점
치료증례 : 1 증례 당	1점 (최대 45점까지)
국내 학회 발표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치과마취와 관련된 내용으로) 심포지엄 연자 자유연제 및 지부 학술 집담회 연자	 20점 10점
국외 학회 발표 : 1 회당	20점
논문(학회지)발표 (치과마취 관련 논문/임상증례 발표 포함) 1 회당 1인 단독 2인 공저 3인 공저 4인 이상 공저	 20점 14점 10점 6점
대한치과마취학회 행사 참석 1 회당 정주진정법 연수회 경구흡인진정법 연수회 종합학술대회 심폐소생술 연수회(기본생명구조술, 고급생명구조술) 학술강연회 등	 20점 10점 8점 3점 2점

※ 치료증례는 최소 30증례 이상이어야 한다.(학회의 인정 교육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10증례까지 포함할 수 있다)

(3) 서류심사에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 구두시험을 시행하고, 필요시 실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시험은 인정의 위원회가 30일전 공고한 내용에 따른 시험(필기, 구두 또는 실기) 으로 한다

KDSA THE KOREAN DENTAL SOCIETY OF ANESTHESIOLOGY 대한치과마취과학회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치과진정 학회인정의위원회에 관한 시행세칙

2010년 7월 24일 제정

제1조 위원 기준

(1) 인정의 인정 3년 이상 경과된 자

(2) 치과진료와 관련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합당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정원 8명을 학회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경과 규정

제1차 인정의가 배출될 때까지 그 심사 위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본 학회의 회장단, 이사 중에서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인정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 심사위원 자격 기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정의 신청자의 심사, 인정 및 등록

(2) 인정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정의 자격고시에 관한 사항

(4) 인정의 수련교육에 관한 사항

(5) 인정의 자격상실의 심사

(6) 기타 인정의 제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회 위임 사항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치과진정 학회인정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세칙

2010년 11월 23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인정의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진료 능력을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인정의 자격을 취득 또는 자격갱신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인정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최근 5년간 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보수교육 5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인 자, 그리고 중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는 평점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해당기간만큼 갱신기간을 연장하며 해당자는 학회양식의 증빙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1)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한며, 갱신 심사료는 ₩100,000원으로 한다.
(2) 인정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학회장이 인정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4조 학회 연회비를 미납한자는 갱신대상에서 제외 된다.

제5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의 자격증 사본
2. 인정의 보수교육 평점 기록지
3. 인정의 보수교육 평점이수 증명서(학회발행)
4. 사진(반명함판) 2매

제6조 **(보수교육)** 보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인정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인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는 자는 인정의 자격이 자동 정지된다. 단 3년 내에 자격갱신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 3년 내에 추가 갱신하지 않을 시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인정의 자격을 다시 신규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인정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갱신을 재신청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인정의 자격을 신규 취득하여야 한다.
3. 갱신 불허가에 불복하는 경우 이사회에 2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부칙)

1.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세칙의 개정은 인정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KDSI
THE KOREAN DENTAL SOCIETY OF ANESTHESIOLOGY
대한치과마취과학회

대한치과마취학회
치과진정 학회인정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

2010년 11월 23일 제정
2021년 3월 10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치과진정 학회인정의 제도에 관한 규정 중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보수교육의 대상은 본 학회 인정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단, 교육기관의 인정의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주관)**
보수교육은 학회장의 감독 하에 인정의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보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 **(교육기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치과마취과학회
(2)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인정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제6조 **(보수교육의 종류 및 인정한계)**
본 학회 인정의 실시에 필요한 보수교육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교육은 필수보수교육, 일반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2) 필수보수교육은 인정의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인정의가 되고자하는 자 및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일반보수교육은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로 한다.

제7조 **(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하 “시행기관 및 단체의 장”이라 함)은 매년 12월 말까지 학회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인정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실시 30일 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등록비)**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제대금,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등록대장 및 수강증 교부)**

(1) 시행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보수교육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1개월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평점카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점)** 인정의 자격 갱신에 필요한 자는 5년 동안 인증의 보수교육 50평점(필수교육 20점 포함)을 득 해야 하며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교육

1) 필수보수교육

기본생명구조술 이수자	7점
고급생명구조술 이수자	13점

2) 일반보수교육

종합학술대회 참가자	10평점
심포지엄 연자	20평점
자유연제 연자 및 지부 학술 집담회 연자	10평점
국외치과마취학회 발표자	20평점
학술강연회 참가자	5평점
정주진정법연수회	20평점
경구진정법연수회	10평점

3)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으로 본 학회의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한다.

4) 학회 인정의 위원회에서 인정한 강좌는 학회가 심사하여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논문에 의한 평점인정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20평점, 2인 공저 14평점, 3인 공저 10평점, 4인 이상 6평점으로 계산한다.

제12조 **(기록보관)** 위원회는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칙)** 경과조치로 다음과 같이 인정의를 부여한다.

서류 심사에 의한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가.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치과마취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 교육자

나.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의 치과마취 관련학 전임 교육자

부 칙

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KDSA KOREAN DENTAL SOCIETY OF ANESTHESIOLOGY 대한치과마취학회